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요약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최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계산방법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임. 이처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1. 즉시연금보험의 상품 구조 및 쟁점

-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납입 익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임
 - 즉시연금보험은 연금만을 지급받는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지, 연금을 언제까지 지급받는지, 나중에 지급받는 목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소송에서 문제가 된 유형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임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보험기간 중에 매월 생존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 시 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임¹⁾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금액(연금월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1) 이와 달리 상속종신형은 만기 또는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즉 상속종신형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상속만기형은 매월 연금은 더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임



CEO Brief

〈표 1〉 연금월액의 계산

-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에서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연금계약순보험료”라고 함
- ② 연금계약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시이율 적용이익’이라 함)이 매월 생존연금 지급을 위한 기본 재원이 됨²⁾
- ③ 위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일정 금액을 나중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따로 공제해 두고,
- ④ 잔여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함

- 위 단계 중 ③단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만기 시에 연금계약순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인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차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해두는 것임
 - 만기에 연금계약순보험료가 아닌 기납입보험료 전액(즉, 차감했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상당액까지 포함된 원금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계약순보험료에서 시작한 적립금에 매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더해서 만기 시 적립금의 수준이 기납입보험료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함
- 그런데 위와 같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에서 매월 일정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한다는 것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함)에는 나와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임
 - 이에 소송에서는 산출방법서상 만기보험금 지급 자원 공제 내용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쟁점 ①), 해당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쟁점 ②)가 핵심 쟁점이 됨

2.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결³⁾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기존 판결들에서는,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이를 계산의 근거로서 명시해야 하는데 약관상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지시문구가 없으므로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험약관의 일부이거나 적어도 해당 보험약관은 당연히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2) 실제로는 공시이율 적용이익은 생존연금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되는 것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합500661 판결



CEO Brief

- 약관에서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가입설계서에서는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 쟁점 ② 관련, 기존 판결들에서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기존 판결에서 법원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 자체는 해당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봄
 - 해당 사안의 보험계약자는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받는 연금월액은 적지만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
- 여론으로서 법원은, 설사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기존 판결에서 법원은,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약관상 연금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공시이율 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만약 산출방법서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금월액의 계산은 약관을 비롯하여 해당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보험의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처럼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백영화 연구위원
pyh@kiri.or.kr